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492호
-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찬성자 11명)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1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 2.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임.

나.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음. 이에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제3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국토계획법」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용어 중 하나인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관리 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영 제 17조제1항에서 정한 <u>사항외에</u>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 ----- ----- <u>사항 외에</u>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노점상</u>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 지구 환경개선 방안	3. <u>거리가게</u>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1)에 따라 인권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2)를 도입·운영하고 있음3).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860개 (조례631, 규칙229)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① 차별 및 인권침해, ②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③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62개(조례 57, 규칙5) 96개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결과에 따르면 노점상·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서울시에서는 순우리말로 순화한 ‘거리가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2013년부터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안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용어 개선 이유 - 노점상·행상〉

자치법규	내용	
개선사유	거리가게는 노점상·행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에서 권고한 용어임	
법률·지침상 근거	<u>2013년 서울시 행정순화어</u>	
상위법상 용어 사용여부	관련 법률	관련 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u>행상 또는 노점</u> 에 의한 상행위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서울특별시, p34

- 또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에서 서울시 자치법규 중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항<sup>4)</sup>이 포함되어 있으나,

2)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3)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19.4.)

현행 부과·징수 관련 내용만 포함된 조례에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동 조례 안 제12조 역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수정의견〉

현행	수정안
제12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의 <u>부과징수</u>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의 <u>부과징수 및 이의신청</u>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와 같이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하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